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1. 개정이유

- 모바일운전면허증 등 디지털 신원증명수단 도입에 따라 신원확인
과 신분증 사본 보관 업무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모바일운전면허증 등과 같이 신분증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
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등 사본화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분증
사본” 편철에 갈음하여 신분확인서를 편철하도록 함(안 7.나.(3)
(나))

3.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746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나.(3)(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분증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등 사본화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분확인서(「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39호 양식)를 신청서에 편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7. 사용자등록의 해지 등 가. (생략) 나.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및 회복 (1)·(2) (생략) (3) 사용자등록의 효력회복 신청 (가) (생략) (나) 사용자등록의 효력회복 신청이 있는 경우 접수담당자는 신청인이 제시한 신분증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신분증 사본을 신청서에 편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다. (생략)	7. 사용자등록의 해지 등 가. (현행과 같음) 나.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및 회복 (1)·(2) (현행과 같음) (3) 사용자등록의 효력회복 신청 (가) (현행과 같음) (나) ----- ----- ----- ----- ---. 다만 신분증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등 사본화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분확인서(「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39호 양식)를 신청서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 (현행과 같음)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연락처	(02) 3480-1394